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0. 11.(금) 10:00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 추진근거
 - 「스포츠클럽법」 제3조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4.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 필요성

- 미래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필요(진로 교육 다양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미래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
-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강화

○ 민간위탁 사업 내용

- 위탁내용: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
 - 위탁기간: 2025. 1. 1.~2026. 12. 31.(2년)
 - 위탁비용: 300,000 천 원 예정(60,000 천원×5개 클럽)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경기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나.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내용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 필요성

-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 학교 자원 발굴과 통합관리를 통하여 학교-마을-지역사회가 상호 연대·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괴산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을 통한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 민간위탁 사업 내용

- 위탁내용: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
- 위탁기간: 2025. 1. 1.~2025. 12. 31.(1년)
- 위탁비용: 100,000천 원 예정(100,000천 원×1개 단체)
- 위탁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수탁기관은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과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됨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경기 종목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5개에 신규로 민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는 2020.10.14.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차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2개의 민간 위탁 사무는 신규로 위탁하거나 동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제출 시기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1)에 따르면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제 4조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²⁾,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³⁾에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 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1)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1)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3)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9.]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1)에 따르면 학교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렵고 훈련 장소가 한정적인 5개 종목을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의 공공 운영 시스템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 패러다임 전환 및 선진 체육 인재 육성 시스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에

-
- 1)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2)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따라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교육감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단순 행정 사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¹⁾에 따르면,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지난 2020.10.14.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에 4번째 재계약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과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이전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고, 교육감 소관 사무 및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므로 절차, 시기 및 위탁 사무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 적정성 검토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성과 등이 포함된 일관성 있는 재계약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